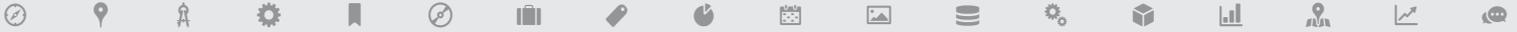


2016년 2월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





CONTENTS

	1	고용보험에 대하여	01
	2	피보험자관리	04
	3	고용안정사업	05
	4	직업능력개발훈련	18
	5	실업급여	24
	6	모성보호지원	26
	7	자영업자 고용보험	27

1 고용보험에 대하여

<p>고용보험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p>적 용 범 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중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활동,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및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제외 ●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 적용이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제외 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생업목적(취미·봉사활동 등 제외)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당연적용 대상 -예: 대학 시간강사 ③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최초 임용 3개월 내 임의가입 가능: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4장)만 적용 ④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중 일부는 당연적용 대상이며, 임의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⑥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제

구분	주요내용	보험료율(%)
실업급여 모성보호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이직을 방지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1.3 (근로자 0.65%, 사업주 0.6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고용유지지원, 고용창출지원, 고용촉진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직업정보의 제공 및 지원기반 구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 사업주훈련지원, 근로자 및 실업자 훈련 지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 0.85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가 산업별 기준(예: 제조업 500명, 건설업 300명, 도·소매업 200명 등) 이하인 기업

고용보험심사제도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 심사처리절차



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 사업주는 전년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건설업·별목업 제외)

* 건설업·별목업의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함(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한 경우 3% 할인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0.65%)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보수 지급 시 원천 공제함
 -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14.1.1. 시행) 하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 보수총액신고,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원대상 및 요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3/5 지원(기가입자 40%, 신규가입자 60%)

<월 보수 130만원 근로자, 보험료지원금(예시)>

(단위: 원)

구분		지원 전 보험료부담액		보험료지원액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가입자	근로자	8,450	58,500	3,380	23,400
	사업주	11,700	58,500	4,680	23,400
신규가입자	근로자	8,450	58,500	5,070	35,100
	사업주	11,700	58,500	7,020	35,100

- 신청 및 지원방법: 사업주 신청,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접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www.4insure.or.kr)으로 신청 가능
-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2 피보험자관리

<p>피 보험 자 격 의 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제출 ● 사업종료, 근로자 퇴직 및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을 이직으로 상실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수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p>일용근로자의 피 보험 자 격 신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매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로 취득·상실이 한 번에 처리 															
<p>피 보험 자 격 확 인 청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고용관리과) 															
<p>과 태 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허위·지연신고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table border="1" data-bbox="424 692 1469 893">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colspan="3">과태료금액</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td> <td>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td> <td>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td> <td>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td> </tr> <tr> <td>거짓으로 신고한 경우</td> <td>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td> <td>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td> <td>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p>4 대 보 험 통 합 신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4대보험 공통사항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도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www.4insure.or.kr) 신고도 가능 															

3 고용안정사업

- 장시간근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경우 지원

고
용
창
출
지
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일 자리 함 께 하 기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제도 도입·근로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지원: 1인당 1년간 연 720만원~1,080만원 * 중소기업(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최대 2년간 2,160만원 ● 설비투자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설비투자비 1/3범위 내에서 증가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제조업은 1,000만원) 최대 2억원 지원 ● 설비투자용자: 설비투자비 2/3 범위 내 최대 50억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5억원) ● 임금보전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세 대 간 상 생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15세~34세)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고용 노력 참여 근로자 1명과 청년 신규채용 1명을 1쌍으로 年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을 2년간 지원 * 유효기간: '18,12,31까지 한시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근로자 1인당 1일 4.3만원 한도로 지원, 훈련비 제외)

고
용
유
지
지
원
금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1개월간 총근로시간이 20/100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행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기업도 2/3 지급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 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50%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기업도 2/3 지급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무급휴업 무급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무급휴업)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무급휴직: 사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휴업등)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내

고
용
촉
진
지
원
금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도모
- 지원대상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계층을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시험고용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 ②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 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다만,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고용 등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600~900만원 지원
 - 대상 근로자 월 임금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개월 단위로 지원(임금의 75% 한도)

월 통상임금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에 대해서는 2년간 지원('15.1.1.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고령자 고용장 지원금

-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여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년 연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정년 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1년간 지원 - 정년 연장 기간이 3년 이상: 2년간 지원 * 다만, ①정년폐지 또는 정년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단축한 경우, ②근로자가 임금 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한시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6개월간 지원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 1년간 지원 * 다만, ①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거나 재고용 전 3개월·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고용조정하는 경우, ②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16.12.31까지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한시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중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에게 업종별로 정한 비율(1~23%)를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로 지원 (대규모 기업은 10%) * 지원금 신청 전 3개월·신청 후 3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지원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 * '15.12.4일부터 시행되며, '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크임금에 비해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 -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7,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제외

- (구)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유효기간은 '15.12.31(300인 미만 사업장은 '16.12.31)
- 다만, '15.12.31(300인 미만 사업장은 '16.12.31)까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된 근로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기간까지는 지원금 지급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연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크임금 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감액된 임금 *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시 연 1,08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연장 시 연 720만원 한도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지원
	재고임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면서 임금 감액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크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은 10%) 이상 감액된 임금 * 연 600만원 한도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지원
	근로시간 단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 - 해당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무 *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된 근로자의 지원요건(임금감액율 제외)은 정년연장형, 재고용형과 동일 * 임금감액률: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피크임금 대비 70%와 해당기간 임금의 차액 * 연 500만원 한도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 지원 ● (사업주)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1년 지원

※ 유효기간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15.12.31.까지 적용대상 근로자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6.12.31.까지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 (사업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원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출산휴가 고액안정 지원금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등 부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1,000인 이상 대규모 5만원, 1,000인 미만 대규모 10만원을 지급) * 국가 및 공공기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지급 (대규모기업 20만원) ● 육아휴직 사용 1개월 이후 장려금 1개월 분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계속 고용시 잔여분 지원
대체인력 지 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비정규직 재 고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매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직 장 어 린 이 집 지 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구 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설 치 비	무상지원	시설설치비	단독 3억원 공동 6억원 산단형 15억원 컨소시엄 6억원	- 시설전환비용의 60~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장애아 시설 80%)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신축비용의 90%, 매입비용의 40% 지원
		교재교구비	5천만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 비용의 80%, 매입비용의 40% 지원 - 교재교구비는 최고 50백만원 무상지원 (근로복지공단 신청)
	용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근로복지공단 신청)
운 영 비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신청)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규모별 월 200~520만원	- 40인 미만: 월 200만원 - 40~59인: 월 280만원 - 60~79인: 월 360만원 - 80~99인: 월 440만원 - 100인 이상: 월 520만원 (근로복지공단 신청)

지 고 축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고 지역주민(3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통영지역 지정기간: '14.1.25.~'15.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지원

일터혁신, 신기술실용화 지원

- '15년도 내일희망 일터 혁신 지원,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사업이 통합

지원대상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다만, 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영역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한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정부 지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 사업장 기준으로 4주~16주 기간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 또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보험 가입, ⑤ 전일제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 최저임금 120~130% 미만은 월 4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중소기업만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여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시간선택제 전환 -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단,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장려금)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15~25시간은 월 20만원, 주 25~30시간은 월 12만원 지원 * 단, 입산기는 주 15~30시간 근무로 전환시 월 2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근로조건 개선 *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 비례 원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70%(청년층 80%)를 월 6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1년간 지원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중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제를 새로 도입·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인식개선 사업(일·가정 양립 캠페인, 컨설팅, 교육)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확산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실천 확대

*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 일·가정 양립 캠페인 참여 승인 기준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연근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캠페인에 참여하는 실천기업 중 시차출퇴근제, 재량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탄력근무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일</th> </tr> <tr> <th>3일 이상</th> <th>1~2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원금</td> <td>월 단위</td> <td>30만원</td> <td>15만원</td> </tr> <tr> <td>주 단위</td> <td>7만원</td> <td>3.5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일		3일 이상	1~2일	지원금	월 단위	30만원	15만원	주 단위	7만원	3.5만원
	구분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일										
3일 이상			1~2일												
지원금	월 단위	30만원	15만원												
	주 단위	7만원	3.5만원												
재택·원격 근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캠페인에 참여하는 실천기업 중 재택·원격근무제를 새로이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원격 근무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1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일</th> </tr> <tr> <th>2일 이상</th> <th>1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지원금</td> <td>월 단위</td> <td>20만원</td> <td>10만원</td> </tr> <tr> <td>주 단위</td> <td>5만원</td> <td>2.5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일		2일 이상	1일	지원금	월 단위	20만원	10만원	주 단위	5만원	2.5만원
	구분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일										
2일 이상			1일												
지원금	월 단위	20만원	10만원												
	주 단위	5만원	2.5만원												

정
규
직
전
환
지
원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종류
 - ① 기간제: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② 파견
 - ② -1 직접고용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 ② -2 상용형파견: 파견사업주가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③ 안전·보건: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지원대상기업
 - ① 기간제 ② 파견: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③ 안전·보건: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정적 업종(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단, 기간제한 예외사유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②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
 - ③ 정규직 전환 후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 가입
 - ④ 기존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내용: 전환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70%(만34세 이하의 청년은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하여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 기간제근로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 사용한 월평균 기간제근로자 수의 120%(단, 상시 5~10인을 사용하는 기업이거나 계산된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까지 지원)
 - * 파견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인원 한도 없음

고용환경개선예자

-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
- 사업유형
 - ①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자금용자
 - 고령자친화시설·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당 10억원 한도,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4%)를 뺀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총 5년
 - ②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자금용자
 - 장애인편의시설, 작업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사업장당 15억원, 대출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4%)를 뺀 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총 5년
 - ③ 여성 고용환경개선 자금용자
 - 여성친화시설(여성전용휴게실, 모유수유실, 기숙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7억원(공동 설치 시 9억원)까지 연리 1~2%로 용자(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청년취업인턴제

-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당시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14.4.1.부터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참여가능)
-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인턴 채용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3개월) 중 월 60만원(강소·중견기업은 월 50만원) 지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고용유지시 최대 390만원 지원
 -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95만원, 12개월 고용유지시 195만원 각각 지원

장년인턴취업지원제

-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 사업내용
 - 대상(인턴참여자): 만 50세 이상(1966.12.31이전 출생자) 장년 미취업자
 - 실시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뿌리산업 등은 5인 미만 가능)
 - 지원내용: ①인턴 채용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3개월) 월 60만원 지원
②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

취업지원
민간위탁

- 부족한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촘촘한 고용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사업구분	지원내용
취약계층 전담 취업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원활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숙인, 건설실용군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의 운영을 지원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의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취업가능성을 향상 시키고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민간에 위탁(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운영)
채용박람회 지원	● 사전·사후 단계별로 매칭 중심의 채용서비스와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취업 지원 대상별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 추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장년층
취업지원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기회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음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지급, 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 이용

사업구분	지원내용
고령자인재은행 (49개소)	●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31개소)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기회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 중장년일자리 희망넷(www.4060job.or.kr)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 중장년의 성공적인 재취업 및 인생2막 준비를 위한 경력재설계 및 채용 연계형 직업훈련

- 워크넷(<http://www.work.go.kr>)
 - 구인·구직자에게 인재정보, 일자리정보 등 각종 취업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의 워크넷 운영('98~)
 -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온라인 채용대행 서비스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일평균 7만명이 방문하는 국가대표 취업지원 포털
 - 고용센터·자치단체·새일센터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의 취업업무 지원
- 직업진로지도(<http://www.work.go.kr/jobMain.do>)
 -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집단상담 및 특강)과 직업심리검사(청소년, 성인)의 개발, 진로상담 및 전문강사 교육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직업전망, 직업사전 및 신직업 등 직업정보, 직업·취업지원·학과 동영상 제작 및 진로교육 콘텐츠 등 개발 (무료)배포
-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
 -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관련 지원금 등 혜택 안내 및 직장이력정보(피보험자격 가입이력),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 서비스 제공
- HRD-Net(<http://www.hrd.go.kr>)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안내,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훈련비용 신청, 자격정보 등 제공

4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피보험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연간지원 한도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능 납부보험료의 240%
 - 대기업: 훈련비용 연간총액 ▶ 고용안정, 직능 납부보험료의 100%
 - * 지원 최소금액: 500만원
 - *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300%(대규모기업 130%)을 한도
 - * 사업주가 다른 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80%까지 추가 지급
- 지원액 산정 방식
 - (집체훈련·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조정계수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20%(대규모 기업은 80%, 1,000인 이상 50%)
 - *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60%(50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90%, 1,000인 이상 대기업 40%)
 - (인터넷원격훈련) 인터넷 원격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 (우편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우선지원 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 * 원격훈련 훈련생 1인당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
 - (스마트훈련) 스마트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8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1,000인 이상 기업 50%)

<p style="text-align: center;">기 간 제 등 훈 련 우 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 실시할 경우 비용 추가 지원 ● 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p style="text-align: center;">유 급 휴 가 훈 련 지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그 외 기업: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8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건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정훈련기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 대기업: 소정훈련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② 훈련비지원: 집체·현장훈련과 동일
<p style="text-align: center;">대 체 인 력 채 용 지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하면서 대체인력을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임금 지원 ● 지원수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비 및 훈련생 임금은 유급휴가훈련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

국가인적자원
개 소 시 업
발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다수의 중소기업과 훈련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 ① 시설·장비비: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내에서 6년 동안 지원하되, 6년 경과 후에는 차등 지원
 - ② 운영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
 - ③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100%)는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
 - ④ 훈련비·훈련수당: 공동훈련비 또는 사업주위탁훈련비 환급 방식으로 수요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훈련 수강생만 지원

국 가 기 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
- 지원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고3 재학생(비진학예정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대학원 비진학예정자로서 다음년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 등으로서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단위기간(1개월)별 훈련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216천원~3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 훈련장려금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고3 216천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236천원, 일반구직자 316천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상담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
 - * 인터넷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정보 등 확인 가능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의 기반이 되는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융자)함으로써 훈련실시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 지원내용
 -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60억 한도로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

대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참여 대기업, 우수훈련기관 연 1% ● 직업훈련시설 및 법인 연 2.5% ● 대규모기업, 기타사업주(단체) 연 3%
대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상환) ● (장비) 평균내용연수(최대 10년,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분기별) 균분 상환

-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p>내일배움 카드 제</p>	<p>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근로자, 이직 예정자, 무급 휴직·휴업자, 3년 이상 사업주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 육아휴직 중인 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자비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으로 지급) * 지원수준: 훈련비용의 100%(정규직 80%),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 직종 60%(정규직 50%), 외국어과정 50%, 인터넷과정 100% *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신청(근로자):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으로 신청 - 지원금 신청(훈련기관): 훈련종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
	<p>실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 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직·창업 촉진과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15세 이상의 실업자, 고3 재학생(비진학예정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서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의 일정금액(1년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50%~80%를 지원)과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는 추가 지원 혜택 부여(▲2유형 참여자는 계좌한도 내 훈련비의 70%~90% 지원,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훈련비 전액 지원) ●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상담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 * 인터넷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정보 등 확인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자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목적 훈련 포함) 중 4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연간소득금액 3,000만원 미만) 또는 전직실업자(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제외)
 -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14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 대부사업과 통합운영(세출구조조정계획의 일환)
- 지원내용
 -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월 100만원 분할 대부
 - 연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상환
- 신청: 근로복지공단(www.workdream.net)

일학습병행제

-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 20인 이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 * 우수기술 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부처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6개월~4년(연간 300~1,000시간 이내)의 일학습병행제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지원내용
 - 훈련비(S-OJT, off-JT),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및 학습근로자 지원금 등 지원
 - 정부·산업계가 인정하는 도제자격(수료증명) 부여
 - *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해당 대학의 규정(계약학과) 또는 학점 인정 규정(학점은행제)을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기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육성(폴리텍·한기대·산업협업체 공동지원)

5 실업급여

구 직 급 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한 생계 안정 및 재취업지원
- (지원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정리하고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지원수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 '16.1월 현재 1일 상한액은 43,416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일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기준 43,416원)

연령 \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 이상~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 (신청방법) 실직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연장급여

-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 ①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지시한 자로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최대 2년)
 - ②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한 자로써 18세 미만인 자 등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지급 가능
 - ③ 특별연장급여: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 지급 가능

실 크 레 디 트 연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길 원하는 경우 해당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일반회계 25% 지원, 본인 부담 25%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보유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구직급여수급자는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또는 1차 실업인정신청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가능
 - * '16년 중 도입 예정(입법 추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이 지연될 수 있음)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800원 *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 제외
광역구직 활동비	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숙박료: 실비(1박당 상한액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에 50,000원) 운 임: 실비(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이 주 비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5톤 이하는 실비(5톤까지는 실비+5톤 초과 7.5톤까지 50%) * 사다리차 이외 옵션은 제외

6 모성보호지원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p>육아휴직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급여로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지급(아빠의 달) * 단, 월 실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
<p>육아근로시간 단축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통상임금의 60% ×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p>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등을 부여받은 경우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임금의 100%(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 지원) - 상한액: 30일에 대해 135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단, 다태아의 경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 지급

7 자영업자 고용보험

<p>가 입 대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유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 되는 사업(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p>신 청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 ● 가입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일(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p>보 험 료 산 정 기 준 (기 준 보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이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험 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 기준보수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는 매년 변동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기준보수) <table border="1" data-bbox="422 672 1455 748"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h>4등급</th> <th>5등급</th> <th>6등급</th> <th>7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월 보수액</td> <td>1,540,000</td> <td>1,730,000</td> <td>1,920,000</td> <td>2,110,000</td> <td>2,310,000</td> <td>2,500,000</td> <td>2,690,00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p>월 보 험 료 산 정 및 납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의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 보 험 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 다만, 만 65세 이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월 보험료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고용안정·직능	3,850	4,320	4,800	5,270	5,770	6,250	6,725
실업급여	30,800	34,600	38,400	42,200	46,200	50,000	53,800
월 보험료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56,250	60,525

구 직 급 여

● 지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6개월 동안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건강악화·자연재해 등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지급수준

-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

〈소정급여일수〉

(단위: 일)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급여일수	90	120	150	180

● 신청절차

-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근로자

- 지원대상: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지원수준: 훈련비용의 100%(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직종 60%)
- 1인당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

실업자

- 지원대상
 - 단위기간(1개월)별 훈련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 전액과 월 최대 216천원~3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 훈련장려금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고3 216천원,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 236천원, 일반구직자 316천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급
- 신청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상담 및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지원
 - * 인터넷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http://www.hrd.go.kr) 접속 시 지원내용, 세부훈련과정정보 등 확인 가능

More Information

워 크 넷	고용보험민원신청	고용안정 지원제도	HRD-Net
<p>채용정보, 맞춤형 채용 정보, 입사지원관리, 취업뉴스, 직업정보·학과정보 등 제공</p>  	<p>고용보험 민원신청 (모성보호, 일용근로 신고) 및 제도소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제도소개 2 맞춤형지원제도 3 전국 고용센터 위치·전화번호  	<p>고용노동부 지원 훈련 과정 검색, 교육훈련 참여방법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훈련기관 평가정보 제공, 개인 훈련이력 조회 등</p>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
www.ei.go.kr

전국 고용센터 안내 **1350**
www.work.go.kr/jobcente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ewel.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